







유도실용한도와 조사준위 이외에 각종 개인피폭측정기의 착용기준, 호흡보호구 등 방호구의 착용기준 등, 방어조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을 통틀어 방사선관리기준이라 부르고 있다.

#### 4. 管理區域에 대한 모니터링內容

##### 4.1 모니터링항목

관리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의 항목, 즉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 이외에, 방사성폐기물, 반출물품 및 퇴실하는 작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의 대상을 포함하여 그림 2에 나타낸다.

여기서 방사선만이 문제가 되는 관리구역의 경우는 공간선량만을 측정하면 된다.

또, 수종의 소량 방사성물질만을 사용하는 소규모의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그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그것을 이동 또는 사용할 때에 필요한 방어수단(서베이미터에 의한 선량체크, 고무장갑의 착용 등)을 정해 놓으면 충분할 때가 많다. 소위 방사성물질의 소재 관리는 방사선관리에 있어서 유효하다. 이 경우, 방사능표지를 방사성물질의 소재, 그 위치표시 이외에 방사선량율, 오염정도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작업환경모니터링의 목적은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작업환경이 안전한 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상한 피폭을 방지하는 동시에 모니터링결과로 부터 피폭의 저감화를 위한 등, 시설이나 작업방법의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있다. 그림 2에 표시한 각 항목의 측정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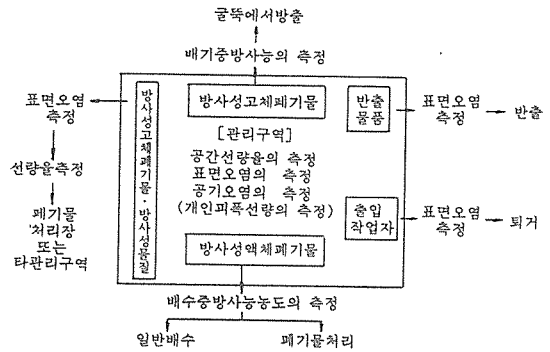


그림 2. 관리구역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

##### 4.2 모니터링의 기능별분류와 측정빈도

작업환경모니터링은 측정의 빈도나 정도, 측정기의 종류 등을 결정한 후, 기능별로 일반모니터링, 작업모니터링 및 특수모니터링으로 나뉘어 생각하면 편리하다.

표 1. 법률로 정한 작업환경의 측정조건과 기록의 보존기간

법 륵	측 정 장 소		빈 도		보존기간
장해방지법	방사선량율	사용·분배·폐기시설등 관리구역내 및 그 경계, 사업소내 거주구역, 사업소 경계	(1) 작업개시전	1회	5년
	오 염	작업실, 폐기작업실, 오염검사실, 관리구역의 경계	(2) 비밀봉RI, 1개월이내	1회	
원자로시설·운전	방사선량율	원자로본체, 사용후연료의 저장시설, 폐기시설등의 차폐물벽 관리구역	(3) 밀봉RI, 3개월이내	1회	10년
	오 염	관리구역	매일운전중	1회	
핵연료물질의 사용	방사선량율	사용시설의 차폐물벽 관리구역, 주변감시구역	매주	1회	
			매일작업중	1회	
	오 염	관리구역	매월	1회	

비고 : 일본의 경우이다.







